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5 선고 2018가합101881 판결 [약정해제권에의한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선

변론 종결 2021. 1. 15.

판결 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000,000원 및 위 돈 중 2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D'였는데, 2017. 9. 13. 상호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상호 변경 전까지는 'D'로, 상호 변경 후부터는 'C'이라 한다)의 현 대표이사이다.
- 2) 피고는 D 설립 당시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D의 대표자로서 일을 하다가 2017. 9. 13. 사임하였다.

나. 법인 양수도계약 체결

- 1) 원고와 피고는 2017. 9. 12.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D를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회사 및 약정의 대상

1. 피고가 매각하는 회사의 소재지 및 용도, 면적

- 1) 소재지 : 충남 아산시 E (주)D
- 2) 용도 및 면적 : 자동차부품생산용도, 대지 3300평, 건평 1960평

2. 기계 및 설비

- 1) 매각하는 보유기계는 별도의 공장 설비명세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3. 생산품

- 1) 매각하는 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생산품명세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4.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제3조] 매매가격 및 잔금지급조건

1. D의 경영권 및 주식 100%(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원, 발행주식총수 2,980,000주)의 매매대금은 금 이십억원(2,000,000,0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의 주주명부는 별첨과 같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임을 확인한다.
2. 계약금 및 잔금 : 계약금 이억사백만원(204,000,000원)과 지분 51% 1차 중도금 2018년 12월 일억구천육백만원(196,000,000원), 3차 중도금 2019년 12월 팔억원(800,000,000원), 2020년 9월 잔금 팔억원(800,000,000원)과 지분 49%, 총 100% 지분인수 조건으로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단 사업실적에 따라서 상호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경영 및 협조

1. 2017년 9월 13일 원고의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는 주식 51%와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경영권 관련 등기,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인도한다. 피고는 원고의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계약금을 받음과 동시에 법인등기부상의 임원전원(원고가 지정한 자는 제외)에 대한 사임서 제출 및 원고가 추천한 임원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추후 임원변경이 필요한 경우 항상 협력하기로 한다.

[제5조] 약정의 해제

1. 원고는 2016년 회계기준 기본실사결과 피고의 고의 또는 현저한 실수에 의한 자본총액 감소가 확인되고 그 결과에 의하여 D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는 즉시 계약금 이억사백만원(204,000,000원)1) 현금반환 및 위약금 이억원(200,000,000원)을 현금지급해야 한다.
- 2) 원고는 2017. 9. 12. 계약금 중 14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17.9. 13. 나머지 계약금 64,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 3) 원고는 2017. 9. 13.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D의 채무 합계5,160,896,078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다. D의 자산 및 운영상태 등

1) D의 2016년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총계가 13,299,498,748원, 부채총계가 2,315,017,075원, 유형자산 중 금형이 11,523,153,407원, 자산 중 재고자산이 2,137,1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F세무회계법인에 C의 자산이나 부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실사를 진행하였다.

3) C에 대한 2017년도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이 224,803,334원, 유형자산 중금형 부분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C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G는 2018. 3. 30. 총부채가 총자산을 2,935,000,000원 상당 초과하고 있고, 채권자의 매출채권 압류와 거래처의 원재료 공급 중단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5) 한편, D 공장 내에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상주하면서 D가 주식회사 I로부터 수주받은 물량을 재하도급받아 제작한 뒤 D에 납품하여 오고 있었다. 그런데 H는 SQ인증(J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협력사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및 형사판결

1) 원고는 피고가 D의 자산상태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289호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20. 11. 18.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상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D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D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 9, 12, 15호증, 을 제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D에 가치 있는 재고자산이 전혀 없었음에도 D의 2016년도 재무상태표에 2,315,000,000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있는 2,137,000,000원 상당의 금형은 모두 1차 협력사 소유임에도 D의 소유 자산인 것처럼 기재하여 합계 4,452,000,000원 상당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 또한 피고는 D는 3,000,000,000원 상당의 적자상태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산가치를 부풀려 원고에 게 3,000,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D 공장 내에 H가 상주하면서 H에게 불법하도급을 주고 있어 SQ인증 취소 위기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 204,000,000원 및 위약금 200,000,000원의 합계 40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D가 3,000,000,000원 상당의 적자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SQ인증조차취소될 위기에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원고에게 3,000,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가 D를 위하여 부담하고 있던 합계 8,651,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원고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0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인수한 8,651,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원고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결할 의무가 있다.2)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2,000,000,000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D가 약 3,000,000,000원 상당의 적자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재고자산평가는 D 직원들의 실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D의 재고조사가 과다 내지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를 지시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D에 대한 정기 외부감사를 실시한 K 회계사는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당시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단지 외부감사를 엄격히 했을 경우 D가 문 닫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재고가치평가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K 회계사가 위와 같이 외부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피고로부터 부실감사를 요청하거나 청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형은 1차 협력사 소유이기는 하나, 피고는 금형제작비에 D의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그렇게 기재하여 왔고, 재무상태표는 회계전문가가 작성하였으며, 피고가 금형을 재무상태표상 자산에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청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D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 직원 급여 지급 등이 연체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5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전후로 원고에게 D의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업체외상채무, 대금 지급방법, 일정 등을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D 사업장 내에 H가 상주하고 있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의 또는 현저한 실수로 D의 자산상태를 부풀렸다거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D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의 운영이 불가능진 해진 것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 즉 C과 H 사이의 분쟁, 1차 협력사들의 주문 중단, 불량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보원, 판사 고지은, 판사 김한울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는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키로 보인다.

2)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에 위와 같이 기재하면서 별도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